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65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전남 보성군 E 대 1,379㎡에 관하여, 피고와 F 사이에 2019. 5.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F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19. 6. 3. 접수 제65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3. 7. F와 사이에 F가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F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G조합에 제출하고 2018. 3. 7.

7,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2019. 9. 16.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G조합의 청구에 따라 2020. 9. 2. 7,651,1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2020. 10. 14. 현재 7,700,736원이다.

라. F는 2019. 5. 29. 피고에게 전남 보성군 E 대 1,3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19. 6. 3. 접수 제652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F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전남 보성군 H 전 486㎡(5,297,400원 상당, F 등 5인 합유재산), 전남 보성군 I 전 932㎡(5,741,120원 상당, F 등 5인 합유재산)를 소유하고 있었고, J 주식회사에 11,822,586원, K 주식회사에 30,599,479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바. F는 현재 원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L 주식회사에 33,725,718원 등 합계 5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 주식회사, M 유한회사, J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F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F가 소유한 나머지 부동산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 처분 후 약 4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고 이자 연체라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실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F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이 3,500만 원이고 피고는 F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위 대금의 액수가 주변 시세에 비추어 정상적인 매매임을 의심할 만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업무를 법무사에 위임하고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가압류, 압류 등기나 제한물권의 등기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와 F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